

## 국내 의학 관련잡지 및 논문집의 투고규정에 나타난 윤리적 기준

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<sup>1</sup>, 서울의대 약리학교실<sup>2</sup>

정인숙<sup>1</sup>, 백정미<sup>1</sup>, 장인진<sup>2</sup>

**연구배경 및 목적:**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과학적 연구는 윤리적 배려하에 과학적 연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하므로, 이런 논문이 게재되는 의학 관련 잡지와 의대논문집의 편집 규정에 윤리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지와 구체적인 기준의 기술에 대해 검토하였다.

**연구대상 및 방법:** 의협 정회원학회지(42개) 및 준회원학회지(13개), 간협정회원학회지(5개), 의과대학 논문집 및 학술지(23개)의 투고규정을 검토하였다. 윤리적 기준으로는 IRB 또는 이와 유사한 윤리위원회의 승인, 헬싱키 선언, 피험자 서면 동의서, 국제의학잡지 편집인회의에서 제시된 공통 요구사항(Uniform Requirements 이하 UR)에서 제시된 윤리성 등으로 분류하였다.

**연구결과:** 전체 검토 대상(83개)의 약 7개(8%)에서만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. 이 중 IRB 또는 기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한 것이 3개(3.6%)였고, UR에 따른 환자의 익명성 보장(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피험자를 식별할 수 없게 하거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), 및 서면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 4개(4.8%)였다. 이 7개를 조사대상의 종류를 구분하여 볼 때 의협정회원학회지가 4개, 의협준회원학회지가 3개였다. 의대논문집 및 학술지에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곳은 없었으며, 전문분야 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도 않았다. 이 외에도 3개의 잡지에서 UR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윤리적인 측면에 관계없이 단지 투고양식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어서 윤리적 기준에서 제외하였다. 한편 헬싱키 선언을 윤리적 기준으로 제시한 잡지 및 논문집은 없었다.

**결론:** 극히 일부 잡지에서 제한적인 윤리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으며, 이것이 그 잡지의 질이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포함하는 연구를 하는 경우 그 윤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잡지의 투고 및 편집규정에 명백하고 상세하게 윤리기준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.